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2월 9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2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2월 15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도시환경국장 박 수 원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 조례 제1455호(2020.5.13. 공포)부칙 제1조에 따라 2021. 1. 1.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-19로 인한 시민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가격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시행일 변경(안 별표5, 부칙 제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○ 본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
- 코로나-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('20.4월)때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리터당 30원으로 일괄 적용한 바 있음.
-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배출량 감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가격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